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6년 5월 10일

나.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다. 회부일자 : 2016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2016년 5월 20일

제20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2016년 7월 8일

제206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 안전행정국장 이 수 영

나. 제안이유

-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수상레포츠의 저변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조성이 마무리됨에 따라,
- 시설 및 프로그램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공모에 의해 우수한 위탁 업체를 선정하여 시설 관리·운영의 활성화 도모 및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위탁재산 현황

- 건 물 명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 위 치 : 구미시 임수동 382-2번지 일원
- 사 업 비 : 5,000백만원(국비1,500, 도비500, 시비3,000)
- 주요시설
 - 구미대교 : 체험시설 1동(2층, 538㎡), 수상계류장(폰툰) 1식, 장비보관소, 사무실, 화장실, 샤워실, 탈의실 등
 - 체육공원 : 수상계류장(폰툰) 1식, 광장 A=605㎡, 교육장 A=450㎡

○ 위탁업무 :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 체결일 ~ 2018. 12. 31

○ 운영 소요예산(2016년) : 33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위탁금	장비구입	비고
330	130	200	

※ 2017년 249백만원, 2018년 255백만원

라. 참고사항

○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4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제5조, 제6조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신 정 순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사무위임 규정과 「구미시사무의민간위탁 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 목적이 관리의 효율성과 체험센터의 운영 특성상 전문성 확보인 만큼 최소한의 인력으로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고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위탁 업체로 선정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